

[주요 개정사항]

목차	주요 개정사항
I.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로나19 정의, 발생현황 추가
II.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응원칙, 심각단계 수행체계 (시·도 즉각대응팀 역할 및 업무 추가)
III.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
IV. 의사환자/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개별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삭제 • 병상배정, 입원격리, 퇴원시 이송, 격리해제, 격리기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 • 선별진료소(보건소) 내소자 관리 절차 추가
V.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진환자 조사·관리 주체를 보건소로 변경하고,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발생사례는 시·도 즉각대응팀이 조사·관리토록 구체화 • 확진환자 관리 강화(격리/격리해제, 입/퇴원, 사망 모니터링 및 보고) • 시·도 환자관리반 역할 추가
VI. 병상 배정 및 이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상 배정 및 운영원칙, 중증도, 자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이송 구체화 • 시·도 환자관리반 역할 추가
VII. 사망자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망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사망자 발생에 따라 사망자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추가
VIII. 실험실 검사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검체(상기도) 수정
IX. 환경,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(2판)」 개정에 따른 보완
서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역학조사서(확진환자), 사례관리보고서(확진환자 및 의사환자), 시·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추가
부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 참고 필요한 안내 및 매뉴얼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시설격리대상자 생활안내 수칙, 환자 중증도 분류, 검사가능 기관, 병상배정 및 절차 안내 등 추가

[사례정의 신구비교표]

구분	현행(6판)	변경(7판)
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의사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조사대상 유증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·지역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역 전파 국가*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*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[격리해제 신구비교표]

구분	현행(6판)	변경(7판)
확진 환자	<p>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, 호흡기검체*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</p> <p>*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</p>	<p>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</p> <p>① (임상기준)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</p> <p>② (검사기준)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단,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, 퇴원한 자는</p> <p>·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(또는)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</p>
의사환자	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	<현행과 같음>
접촉자	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	<현행과 같음>